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74
----------	-------

발의연월일 : 2026. 8. 25.

발 의 자 : 유동수 · 정일영 · 강준현
이수진 · 윤준병 · 박민규
김교홍 · 전현희 · 이강일
김현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법 제35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료를 수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구제 사건의 미합의 종결, 부당 거래 관행 개선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의 이행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및 제7항, 제84조제1항제1호, 제8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원장은 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4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 또는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정보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8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한 시료 또는 제출받은 자료 및 정보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제8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3.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업무) ① ~ ⑤ (생략)	제35조(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⑥ 원장은 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
<u><신설></u>	<u>⑦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4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 또는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정보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u>
제8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4조(벌칙) ①----- ----- ----- -----.
<u><신설></u>	<u>1. 제3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거한 시료 또는 제출</u>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8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u><신설></u> 2. ~ 4. (생략) ② (생략)	<u>받은 자료 및 정보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u>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6조(과태료) ①----- ----- -----. 1. (현행과 같음) 2. <u>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u> 3. <u>제3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